

공 주 시

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제783호 2021. 11. 29.(월) 수시분

선	기관의 장
람	

【조 례】	
제1485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	3
【공 고】	
제2021-2308호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7
제2021-2317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	12

회 람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공주시 (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☎ 041-840-2541)

《시보발행안내》

본 「시보」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,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, 규칙, 훈령, 예규의 제정 및 개·폐사항, 인사, 공고, 고시, 의회의 집회, 개최, 휴회 및 회기의 연장,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
매월(1일, 15일)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.(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)

보급(배부)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(배부)됩니다.

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「시보」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치매정신과”를 “치매정신과, 감염병관리과”로 한다.

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085명”을 “1,09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

제1호 중 “1,067명”을 “1,07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최초로 인사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8]

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26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 사 무 국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095	-				
정무직 계	1	1				
시장	1	1				
일반직 계	1,049	-				
3급	1	1				
4급	6(1)	3	1	2(1)		
5급	53	28	2	6	1	16
6급 이하 계	989	-				
별정직 계	2	-				
6급 이하 계	2	-				
연구직 계	10	-				
연구관	-					
연구사	10	9		1		
지도직 계	32	-		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29			29		
전문경력관 계	1	-				
나군	1	-				

※ 괄호() 표기된 숫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지도관 복수 정원 수입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경제도시국에 두는 과) 경제도시국에 경제과, <u>도시정책과</u>, 허가건축과, 건설과, 교통과, 도로과, 산림공원과, 상하수도과를 둔다.</p>	<p>제10조(경제도시국에 두는 과) -- ----- <u>도시정책과</u>, <u>도시재생과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6조(소관사무 등) ① 보건소에 는 보건정책과, 건강관리과, <u>치매정신과</u>를 둔다.</p>	<p>제16조(소관사무 등) ① ----- ----- <u>치매정신과</u>, <u>감염병관리과</u>----- -----.</p>
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4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<u>1,085명</u>---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067명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24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1,095명</u>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,077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공주시 공고 제2021-2308호

「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29일

공 주 시 장

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옴부즈만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지원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옴부즈만의 구성 자격 완화
 - 부교수 이상 → 조교수 이상(안 제4조 제3항 제1호)
 - 4급 이상 공무원 → 5급 이상 공무원(안 제4조 제3항 제3호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1. 11. 29. ~ 12. 20.(21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(참조 : 감사정보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 (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제출방법 : 우편, 전화, 팩스, 직접 방문 등
-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: 공주시청 감사정보담당관(조사팀)

주소 :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/ 우편번호 : 32552

전화 : 041-840-2094 / FAX : 041-840-2308

5. 참고사항

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(www.gongju.go.kr) 고시·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견

입법예고(안)	의 견(안)	사 유

의견제출자

- 성 명 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 :
- 주 소 :
- 연락처 :

기타 참고사항 :

제 출 처 :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 조사팀 (☎ 041-840-2094)

제출방법 ㄱ 우편 : 충남 공주시 봉황로 1(봉황동 319) (우편번호 32552)

ㄴ FAX : 041-840-2308

공주시 조례 제 호

공주시 시민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공주시 시민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항제1호 본문 중 “**부교수 이상**”을 “**조교수 이상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
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“**4급 이상 공무원**”을 “**5급 이상 공무원**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옴부즈만의 구성) ③ 옴부즈만은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시의회 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<u>부교수 이상</u>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4급 이상 공무원</u>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</p> <p>4. 5. (생략)</p>	<p>제4조(옴부즈만의 구성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 <u>조교수 이상</u> ----- ----- 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5급 이상 공무원</u>----- -----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

「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29일

공 주 시 장

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가.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의 적기 추진을 위해 2022년도 **기준인력***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*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인력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원 증원(안 제24조)

- [현행] 1,095명 → [개정] 1,131명 * 36명 증원

· (집행기관) 1,077명 → 1,109명 / 32명 증

▶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24(복지 12, 간호 12), 아동학대 보호 2, 중대재해 예방 2 등

· (의회사무기구) 18명 → 22명 / 4명 증

▶ 의회 인사권 독립 인력(인사담당 1, 정책 지원관 3)

나.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(별표 7)

- [현행] 8급 24% 이내, 9급 8% 이상 → [개정] 8급 25% 이내, 9급 7% 이상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(참조 : 행정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), 주소 및
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: 공주시청 행정지원과

주소: 공주시 봉황로 1 / 우편번호: 32552 / 전화: 041-840-2068 /

FAX: 041-840-2307

4. 참고사항

가.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되는 경비(비용 추계)

- 정원 3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 : 1,715백만원

※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로 인건비를 지원

나.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(www.gongju.go.kr) 고시·공고란에서도
보실 수 있습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

의 견

입법예고(안)	의 견(안)	사 유

의견제출자

- 성 명 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 :

- 주 소 :

- 연락처 :

기타 참고사항 :

제출처 : 공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 (☎ 041-840-2068)

제출방법 ㄱ 우편 : 충남 공주시 봉황로 1(봉황동 319) (우편번호 32552)

ㄴ FAX : 041-840-2307

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095명”을 “1,13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077명”을 “1,109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18명”을 “22명”으로 한다.

별표 7,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7] **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** (제25조 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 율	1% 이내	6%이내	28%이내	32%이내	25%이내	7%이상	1%이내

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3% 이내	97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

3. 별정직 공무원

구 분	5급 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
비 율		50% 이내	50% 이상		

* (비고)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8] **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**(제26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 사 무 국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131	-				
정무직 계	1	1				
시장	1	1				
일반직 계	1,085	-				
3급	1	1				
4급	6(1)	3	1	2(1)		
5급	53	28	2	6	1	16
6급 이하 계	1,025	-				
별정직 계	2	-				
6급 이하 계	2	-				
연구직 계	10	-				
연 구 관	-					
연 구 사	10	9		1		
지도직 계	32	-				
지 도 관	3			3		
지 도 사	29			29		
전문경력관 계	1	-				
나군	1	-				

※ 괄호() 표기된 숫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지도관 복수 정원 수입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<u>1,095명</u> ---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077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18명</u>	제24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1,131명</u> --- -----. 1. ----- <u>1,109명</u> 2. ----- <u>22명</u>